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Chungyo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문 안내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8/main/index.do>)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공급계약 시 방문예약을 통해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 포함 입장 가능)
- 당첨자는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8/main/index.do>)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예약가능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상담 전화(☎055-321-5501),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 유형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5.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5.24(금)	24.06.03(월)	24.06.04(화)	24.06.05(수)	24.06.12(수)	24.06.14(금) ~ 24.06.21(금)	24.06.24(월) ~ 24.06.26(수)

I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기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 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 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포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8/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4.05.24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4.05.2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가(23.05.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4.06.03(월)	24.06.04(화)	24.06.05(수)	24.06.12(수)	24.06.14(금) ~ 24.06.21(금)	24.06.24(월) ~ 24.06.26(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2-5 번지 - 문의 : ☎ 055-321-550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 2020.2.21.부터 개정 ·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 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김해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 제101조(불법처벌)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단,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원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흠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과-19012호(24.05.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7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46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6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6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6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7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계		
민영 주택	2024000113	01	084.9075A	84A	84.9075	26.3491	111.2566	56.3412	167.5978	46.0050	365	36	36	65	32	11	180	185	14
		02	084.9937B	84B	84.9937	26.7582	111.7519	56.3984	168.1503	46.0517	54	5	5	9	4	2	25	29	2
		03	084.7963C	84C	84.7963	26.6598	111.4561	56.2675	167.7236	45.9448	105	10	10	18	9	3	50	55	4
		04	084.5813D	84D	84.5813	26.4293	111.0106	56.1247	167.1353	45.8283	162	16	16	29	14	4	79	83	6
		05	084.7470E	84E	84.7470	26.7802	111.5272	56.2347	167.7619	45.9180	28	2	2	5	2	1	12	16	1
합 계											714	69	69	126	61	21	346	368	27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84.9075A	084.9937B	084.7963C	084.5813D	084.7470E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84E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2)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2) × 0.3025 또는 공급면적(m^2)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9	1	2	4	0	16	
	장기복무제대군인	5	1	1	2	0	9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6	1	2	3	0	12	
	중소기업근로자	5	1	1	2	1	10	
	장애인	경상남도	5	1	2	3	12	
		부산광역시	3	0	1	1	5	
		울산광역시	3	0	1	1	5	
		소계	36	5	10	16	6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	5	10	16	2	69	
신혼부부 특별공급		65	9	18	29	5	126	
생애최초 특별공급		32	4	9	14	2	6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2	3	4	1	21	
합 계		180	25	50	79	12	34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	총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1회(5%)	2회(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4.11.22	2025.04.22	2025.10.22	2026.05.22	2026.10.22	2027.03.22
084.9075A	84A	365	101 동 2,4 호 102 동 3,4 호 103 동 1,3,4 호 104 동 1,3 호 105 동 3,4 호 106 동 2,4,5 호	2 총	14	345,840,315	214,159,685	560,000,000	28,000,000	28,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3 총	14	353,189,422	218,710,578	571,900,000	28,595,000	28,595,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171,570,000
				4 총	14	360,538,529	223,261,471	583,800,000	29,190,000	29,19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175,140,000
				5-14 총	140	367,887,636	227,812,364	595,700,000	29,785,000	29,785,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178,710,000
				15-20 총	84	375,236,742	232,363,258	607,600,000	30,380,000	30,380,000	60,760,000	60,760,000	60,760,000	60,760,000	60,760,000	60,760,000	182,280,000
				21-29 총	99	382,647,606	236,952,394	619,600,000	30,980,000	30,98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185,880,000
084.9937B	84B	54	102 동 2 호 105 동 2 호	2 총	2	346,928,734	215,571,266	562,500,000	28,125,000	28,125,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168,750,000
				3 총	2	354,268,204	220,131,796	574,400,000	28,720,000	28,72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172,320,000
				4 총	2	361,669,351	224,730,649	586,400,000	29,320,000	29,320,000	58,640,000	58,640,000	58,640,000	58,640,000	58,640,000	58,640,000	175,920,000
				5-14 총	20	369,070,497	229,329,503	598,400,000	29,920,000	29,920,000	59,840,000	59,840,000	59,840,000	59,840,000	59,840,000	59,840,000	179,520,000
				15-20 총	12	376,409,967	233,890,033	610,300,000	30,515,000	30,515,000	61,030,000	61,030,000	61,030,000	61,030,000	61,030,000	61,030,000	183,090,000
				21-29 총	16	383,811,113	238,488,887	622,300,000	31,115,000	31,115,000	62,230,000	62,230,000	62,230,000	62,230,000	62,230,000	62,230,000	186,690,000
084.7963C	84C	105	101 동 3 호 103 동 2 호 104 동 2,4 호	2 총	4	346,046,876	214,953,124	561,000,000	28,050,000	28,05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3 총	4	353,387,264	219,512,736	572,900,000	28,645,000	28,645,000	57,290,000	57,290,000	57,290,000	57,290,000	57,290,000	57,290,000	171,870,000
				4 총	4	360,789,337	224,110,663	584,900,000	29,245,000	29,245,000	58,490,000	58,490,000	58,490,000	58,490,000	58,490,000	58,490,000	175,470,000
				5-14 총	40	368,129,725	228,670,275	596,800,000	29,840,000	29,840,000	59,680,000	59,680,000	59,680,000	59,680,000	59,680,000	59,680,000	179,040,000
				15-20 총	24	375,470,113	233,229,887	608,700,000	30,435,000	30,435,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60,870,000	182,610,000
				21-29 총	29	382,872,185	237,827,815	620,700,000	31,035,000	31,035,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186,210,000
084.5813D	84D	162	101 동 1 호 102 동 1,5 호 105 동 1,5 호 106 동 1 호	2 총	6	344,821,725	213,878,275	558,700,000	27,935,000	27,935,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167,610,000
				3 총	6	352,166,236	218,433,764	570,600,000	28,530,000	28,53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171,180,000
				4 총	6	359,510,747	222,989,253	582,500,000	29,125,000	29,125,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174,750,000
				5-14 총	60	366,855,259	227,544,741	594,400,000	29,720,000	29,72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178,320,000
				15-20 총	36	374,199,770	232,100,230	606,300,000	30,315,000	30,315,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181,890,000
				21-29 총	48	381,544,282	236,655,718	618,200,000	30,910,000	30,91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185,460,000
084.7470E	84E	28	106 동 3 호	2 총	1	346,069,898	215,230,102	561,300,000	28,065,000	28,065,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168,390,000
				3 총	1	353,468,506	219,831,494	573,300,000	28,665,000	28,665,000	57,330,000	57,330,000	57,330,000	57,330,000	57,330,000	57,330,000	171,990,000
				4 총	1	360,805,459	224,394,541	585,200,000	29,260,000	29,26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175,560,000
				5-14 총	10	368,204,068	228,995,932	597,200,000	29,860,000	29,860,000	59,720,000	59,720,000	59,720,000	59,720,000	59,720,000	59,720,000	179,160,000
				15-20 총	6	375,541,021	233,558,979	609,100,000	30,455,000	30,455,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182,730,000
				21-29 총	9	382,939,629	238,160,371	621,100,000	31,055,000	31,055,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186,330,000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대복리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차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 신용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 신용 대출은 본인의 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계약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차 계약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 개시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등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구 분	내 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p> </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9세대

구 分	내 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추천기관	<p>■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p> <p>■ 장애인 : 경남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p> <p>■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p> <p>■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p>
당첨자 선정방법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구 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 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 항목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계	100	기 준 점 수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p> <p>(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 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 ① 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순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 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자격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자격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 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5.24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전년도 소득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 고	소득 구분	비율	소득 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4,040,114원	12,421,793원~ 15,301,251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토지	단독주택 주택 외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IV-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1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5.24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전년도 소득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 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 11,207,214원	10,723,008원 ~ 13,197,547원	11,407,593원 ~ 14,040,114원	12,432,268원 ~ 15,301,251원	13,456,942원 ~ 16,562,389원	14,481,616원 ~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V-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1세대

구 分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구 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m 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m 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m 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head> <tbody> <tr> <td>전용 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td><td>40%</td><td>60%</td></tr> </tbody> </table>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 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	40%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 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1	2년 이상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비 고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12(수) ~ 2024.06.2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최종 안내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6.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6.14.(금) ~ 24.06.21.(금) (10:00~16:00) (8일간)
제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2-5 번지
유의사항	<p>※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이전, 아래 [표1] 및 [표2]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당첨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표1]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표3]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4.)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청약자 단신 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4.)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4.)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4.)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4.)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해당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세대 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로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기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input type="radio"/>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 / •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input type="radi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input type="radio"/>	소득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속의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단, 상기 5개년도 서류 중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 (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기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O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 / • 견본주택 비치
	O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O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O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인감도장
	O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표2]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표3]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4.)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입주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 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 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기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 [표3]

구 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표4]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⑤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표5]

해당 여부	서류 구분	해당 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대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등(※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표6]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기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주민센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4.06.24.(월)~24.06.26.(수), 10:00~16:00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2-5 번지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8/main/index.do)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055-321-5501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input type="radio"/>	신분증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input type="radi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비치 (6억원 초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비치 (6억원 초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input type="radio"/>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만원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구매 및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만원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구매 및 출력
	<input type="radi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input type="radio"/>	적격여부 확인 추가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위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견본주택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본인의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본인의 인감도장
	<input type="radio"/>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대리인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대리인 인감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87201-01-183820	대신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 (가상계좌)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미체결, 과오납 등으로 환불 신청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인터넷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겸종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약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주 택 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84A	23,600,000	2,360,000	21,240,000
84B	23,700,000	2,370,000	21,330,000
84C	23,600,000	2,360,000	21,240,000
84D	23,500,000	2,350,000	21,150,000
84E	23,600,000	2,360,000	21,24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387237-01-005420	대신자산신탁(주)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 (가상계좌)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주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1) 시스템 에어컨① (일반형)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제조사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5,700,000	570,000	5,13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0,500,000	1,050,000	9,45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8,800,000	880,000	7,920,000
84B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5,700,000	570,000	5,13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0,400,000	1,040,000	9,36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8,800,000	880,000	7,920,000
84C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0,600,000	1,060,000	9,54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9,000,000	900,000	8,100,000
84D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5,600,000	560,000	5,040,000
	전실 or 침실2,3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0,200,000	1,020,000	9,180,000
	전실(침실2,3 선택형 옵션 중 ②,③)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8,600,000	860,000	7,740,000
84E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5,600,000	560,000	5,04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0,300,000	1,030,000	9,27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8,700,000	870,000	7,830,000

2) 시스템 에어컨② (고급형)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제조사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6,400,000	640,000	5,76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1,400,000	1,140,000	10,26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9,500,000	950,000	8,550,000
84B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6,400,000	640,000	5,76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1,300,000	1,130,000	10,17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9,600,000	960,000	8,640,000
84C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6,700,000	670,000	6,03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1,500,000	1,150,000	10,35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9,800,000	980,000	8,820,000
84D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6,300,000	630,000	5,670,000
	전실 or 침실2,3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1,100,000	1,110,000	9,990,000
	전실(침실2,3 선택형 옵션 중 ②,③)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9,400,000	940,000	8,460,000
84E	기본	LG전자	거실+주방+안방 [3개소]	6,400,000	640,000	5,760,000
	전실 or 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①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1,300,000	1,130,000	10,170,000
	전실(침실1,2 선택형 옵션 중 ②)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3 [5개소]	9,500,000	950,000	8,550,000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3)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 포함)

품 목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인덕션	비스포크	삼성전자	전 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오브제	LG전자		1,600,000	160,000	1,440,000
B/I 식기세척기	삼성	삼성전자	전 타입	1,100,000	110,000	990,000
	LG	LG전자		1,800,000	180,000	1,620,000
냉장고 + 특화수납장	비스포크	삼성전자	전 타입	6,100,000	610,000	5,490,000
	오브제	LG전자		6,700,000	670,000	6,030,000
의류관리기	비스포크	삼성전자	전 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오브제	LG전자		1,900,000	190,000	1,710,000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설치 위치 및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500,000	150,000	1,350,000
		거실 스타일업①_바닥형	3,400,000	340,000	3,060,000
	주방	거실 스타일업②_벽부형	2,000,000	200,000	1,800,000
		주방 스타일업	2,000,000	200,000	1,800,000
		주방 특화	7,400,000	740,000	6,660,000
	조명	주방 팬트리	400,000	40,000	360,000
		조명 스타일업①	4,900,000	490,000	4,410,000
	욕실	조명 스타일업②	6,500,000	650,000	5,850,000
		욕실 스타일업	4,600,000	460,000	4,140,000

84B	침실3	침실3 알파룸형	3,100,000	310,000	2,790,000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2	불박이장 (수납강화형)	1,100,000	110,000	990,000
	침실1,2 선택형 <①,② 中 택1>	①대형 팬트리 + 흠 오피스	1,900,000	190,000	1,710,000
		②대형 팬트리 + 드레스룸	3,100,000	310,000	2,790,000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500,000	150,000	1,35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①_바닥형	3,000,000	300,000	2,700,000
		거실 스타일업②_벽부형	3,200,000	320,000	2,88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1,700,000	170,000	1,530,0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4,800,000	480,000	4,320,000
	욕실	욕실 스타일업	4,600,000	460,000	4,140,000
84C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200,000	20,000	180,000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2	불박이장 (수납강화형)	900,000	90,000	810,000
	침실1,2 선택형 <①,② 中 택1>	대형 팬트리 + 흠 오피스	2,100,000	210,000	1,890,000
		대형 팬트리 + 드레스룸	3,300,000	330,000	2,970,000
	침실3 선택형 <①,② 中 택1>	①홈 오피스	900,000	90,000	810,000
		②대형 드레스룸	2,700,000	270,000	2,430,000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500,000	150,000	1,35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①_바닥형	2,900,000	290,000	2,610,000
		거실 스타일업②_벽부형	2,800,000	280,000	2,520,000
84D	주방	주방 스타일업	1,700,000	170,000	1,530,0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4,800,000	480,000	4,320,000
	욕실	욕실 스타일업	4,600,000	460,000	4,140,000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400,000	40,000	360,000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2	불박이장 (수납강화형)	900,000	90,000	810,000
	침실1,2 선택형 <①,② 中 택1>	대형 팬트리 + 흠 오피스	2,000,000	200,000	1,800,000
		대형 팬트리 + 드레스룸	3,200,000	320,000	2,880,000
	침실3 선택형 <①,② 中 택1>	①홈 오피스	900,000	90,000	810,000
		②대형 드레스룸	2,700,000	270,000	2,430,000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500,000	150,000	1,35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①_바닥형	3,100,000	310,000	2,790,000
		거실 스타일업②_벽부형	3,100,000	310,000	2,79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1,700,000	170,000	1,530,0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5,200,000	520,000	4,680,000
	욕실	욕실 스타일업	4,600,000	460,000	4,140,000

84E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500,000	50,000	450,000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1	불박이장 (수납강화형)	1,300,000	130,000	1,170,000
	침실2,3 선택형 <(1),(2),(3) 中 택1>	①대형 팬트리 + 홈오피스	2,100,000	210,000	1,890,000
		②대형 팬트리 + 드레스룸	3,300,000	330,000	2,970,000
		③드레스룸 + 드레스룸	4,200,000	420,000	3,780,000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500,000	150,000	1,35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①_바닥형	3,000,000	300,000	2,700,000
		거실 스타일업②_벽부형	3,300,000	330,000	2,97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1,900,000	190,000	1,710,0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4,800,000	480,000	4,320,000
	욕실	욕실 스타일업	4,600,000	460,000	4,140,000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200,000	20,000	180,000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2	불박이장 (수납강화형)	1,100,000	110,000	990,000
	침실1,2 선택형 <(1),(2) 中 택1>	대형 팬트리 + 홈 오피스	2,000,000	200,000	1,800,000
		대형 팬트리 + 드레스룸	3,100,000	310,000	2,790,000
	침실3 선택형 <(1),(2) 中 택1>	①홈 오피스	900,000	90,000	810,000
		②대형 드레스룸	2,700,000	270,000	2,430,000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동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대금 납부 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387237-01-005433	대신자산신탁(주)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 (가상계좌)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301호 흥길동 → 1010301흥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대금 자금관리대리사무 관련 사항

* 대신자산신탁㈜는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급대금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보관 및 시행위탁자 (주)진호개발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의 요청에 따른 출금 등 단순관리만을 담당하며, 시행위탁자 (주)진호개발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가 부담해야 할 일체의 의무(옵션품목 설치·하자보수, 본 계약 해제/해지시 공급대금 반환의무, 기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공급자인 시행위탁자 (주)진호개발에게 있습니다.

X

참고사항 및 단지 여건, 기타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건물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 주택 등”的 정의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의 경우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포함)
- “소형·저가 주택 등” 특례 : 상기 “소형·저가 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로,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사례2) "소형·저가 주택 등"을 처분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해당 "소형·저가 주택 등"의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소형·저가 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에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에서 "소형·저가 주택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7년 09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L-라운지, 피트니스, GX룸, 멀티룸, 실내골프클럽, 탈의사워실, 코인세탁실, L-다이닝, 북카페, 독서실, 1인독서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김해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김해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김해시에서 선정하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주차가 가능하며, 수분양자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주체는 김해시와 협의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 ~ 70% 범위 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자녀의 우선 입소비율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명칭은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등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공공지,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본 사업지의 사업계획승인 조건 상 초등학교 배정은 구산초등학교, 중학교는 13학교군 내 배정될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제4학교군 내 배정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 김해 제4학교군 내 모든 고등학교가 진학대상임.) 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바람.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북측의 도로의 폭은 15M, 단지 서측의 확폭예정 도로의 폭은 21M, 단지 남측의 확폭예정 도로의 폭은 10M임. 단지 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일부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북측에 높이 15층의 김해구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 남측에 위치한 구거시설의 경우,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단지공사진행 중 임시철거되었다가 재시공될 예정임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북동측에는 기부채납 공공공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내 소유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당 단지와는 약 2~4m단차가 있으며, 분양홍보물(CG,모형 등)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추가인허가 진행등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훈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 현장은 2023년 06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2년 12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조경 및 옹벽 계획 등은 향후 경미한 사업승인변경을 통해 현장 여건 및 경미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으로 시공 예정이며, 분양홍보물과 상이하게 현장 시공 될 예정임.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사업승인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제공품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름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모든 타일의 경우 시공여건에 따라 나누기도 변경될 수 있음.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둘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지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및 견본주택	<p>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은 84A 타입과 84D 타입이 건립되었으며, 마감재는 84A 타입은 WHITE(화이트) / 84D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해당 타입을 참조하여 관람하시기 바람. 마감재는 84A타입은 WHITE(화이트)형으로, 84B/84C/84D/84E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함.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들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 세대 현관문들 및 문틀을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이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들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을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활용하여 보관할 예정임.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PIT층 및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임.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수경시설, 광장,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안방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이중창 타입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안방창에 대해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쌓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단,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함.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음.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나 음용할 수 없으며, 물놀이형이 아닌 관상용 수경시설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6개소로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남서측, 102동 남서측, 103동 동측, 104동 남측, 105동 북서측, 106동 북동측에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현장 여건에 따라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두 동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통합하여 설치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세대와의 거리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는 제공됨. 단, 3년 후 비용이 발생됨. 단지 북측 차량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인 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어 105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측출입구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동선, 차량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상부 조경토심의 일부 변경될수 있음.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수 있음.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수 있음. 원파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원파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음.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 102, 103, 105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24(g)로 설계되어 있음. 본 단지 내 101동, 103동, 105동, 106동의 일부 중저층세대에 한해 일조수인한도를 불만족하는 세대가 있음.
단지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차량출입구는 서측, 북측에 2개소가 설치되며, 북측의 차량출입구의 경우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하고, 차량회차만 가능함. 키즈스테이션의 경우 북측 차량출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음.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단지는 전동 필로티 계획되어 있으며, 105동 2, 3, 4호 하부에는 필로티 대신 북카페, 독서실, 1인독서실이 설치되어 있음 일부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 각동 필로티 내부에는 휴게시설이 계획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동 남측에 주민운동시설, 동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남서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1호라인 측면과 2호라인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1호라인 측면에 위치한 D.A의 경우, 그 위치에 유의하시기 바람. 101동 남동측에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1동 북측에는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차량의 데크식 출입구, 단지내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소음, 조망간섭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1동은 24.5레벨 기준으로 1층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고 (4호 라인 1층 필로티 레벨은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해 변경 가능성 있음), 30레벨 기준으로 2층세대가 위치하고 있어, 101동 1호라인 2층 세대는 바로 지반층에 면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102동 남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3, 4, 5호라인 후면부와 1호라인 동측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 1호라인 북측에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 하부에는 커뮤니티센터_스포츠 시설(L-라운지, 피트니스, GX룸, 멀티룸, 실내골프클럽, 탈의사워실, 코인세탁실, L-다이닝 등)이 위치하여 소음, 조망간섭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 남동측에 구산초등학교 통학을 위한 통로와 다리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3동 서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동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1, 2호라인 하부 및 후면, 3호라인 하부와 전면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3호라인 전면에 위치한 D.A의 경우, 그 위치에 유의하시기 바람. 103동 서측에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3동 남측에 구산초등학교 통학을 위한 통로와 다리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3동 1,2로라인 코어에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4동 동측에 휴게정원, 북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남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2호라인과 3호라인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3호라인 전면에 위치한 D.A의 경우, 그 위치에 유의하시기 바람. 104동 4호라인 북측에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4동 남동측에 단지내 단차를 올라가기 위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북측에 단지내 단차를 올라가기 위한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남동측에 약 3~6m 높이의 용벽이 조성되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105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서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3호라인 북측과 5호라인 하부와 1호라인 북서측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3호라인 전면에 위치한 D.A의 경우, 그 위치에 유의하시기 바람. 105동 남측에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5동 북측에는 문주, 회차공간, 맘스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2,3,4호 하부에는 북카페, 독서실, 1인독서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6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북동측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1호라인 하부와 4호라인 후면 및 1호라인 북동측 및 북서측, 주동 남측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3호라인 전면에 위치한 D.A의 경우, 그 위치에 유의하시기 바람. 106동 북측에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6동 북측에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6동 4,5로라인 코어에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6동 3호라인은 엘리베이터를 단독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주동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3세대 조합인 102동 1,2,3호라인 및 105동 1,2,3호라인은 2호기 설치되며, 그외 나머지 코어는 2세대 조합으로 1호기 설치됨. 단, 106동 3호라인은 1세대가 1호기를 단독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3동 1,2호라인 및 106동 5,6호라인에 설치되는 외부계단은 지상층과 지하1층, 지하2층 지하주차장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단지의 단차를 이동하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서측 단지출입구 쪽에 1개소, 101동 북측에 1개소, 104동 북측과 남측에 각각 1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104동 남측의 경우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또한 해당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무인 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별 지하2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
지하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1층은 101동과 연결되지 않으며, 지하2층은 전동 동선연결되어 있음. 지하2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헨渌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2층에 급속16대/ 완속27대 지하1층에 급속 5대/ 완속 11대 총 59대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지하2층 차량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이 13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주차공간과는 차단기를 통해 분리되어 있음.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보관함은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는 102동 하부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_스포츠시설에 같이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로비를 통해 지상층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_스포츠 시설(L-라운지, 피트니스, GX룸, 멀티룸, 실내골프클럽, 탈의사워실, 코인세탁실, L-다이닝 등)은 102동 하부 지하 1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로비를 통해 지상층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_컬처(북카페, 독서실, 1인독서실 등)은 105동 하부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당은 105동 북측 회전교차로 서측에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105동 북측 경로당 서측에 접하여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집은 106동 북측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북측 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105동 북측 지상 1층에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람.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북카페(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6동 인근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측 차량 출입구에는 별도의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북측 차량출입구는 회차전용으로 문주가 설치됨. 단지 서측 차량 출입구에는 별도의 경비실이 설치되며, 북측 차량출입구에는 문주일체형 경비실이 설치되고,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음. 문주 계획 및 설치로 인하여 본공사시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의 형태, 디자인, 크기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화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탑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화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증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84A,C,D 단위세대 미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 내부의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22.8월 이후 최초사업승인 접수 사업장의 경우, 주택법 제 41조 2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대상이 되며, 당사업장은 22.12월 최초사업승인접수 됨에 따라 이에 해당됨. 당 현장 인허가도서 상에는 30T층간소음완충재, 모집공고 상 주택성능등급에는 경량4/중량4 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정된 법규 충족을 위하여 현재 롯데건설에서 개발진행중인 층간소음완충재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층간소음완충재 두께, 바닥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주택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모든 무상 선택형 및 유상 옵션은 확장 시 선택 가능하며, 확장 미선택 시 기본 시공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확장세대의 경우 거실 및 안방은 조망형창호(유리난간일체형)으로 시공되나,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침실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철재난간으로 시공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하향식 피난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4A, 84B, 84C, 84E 탑입은 다용도실을 통해서 접근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84D타입은 침실1 인근에 설치된 실외기실을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임.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짹수층, 훌수층 교차되며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윗층의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제공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각 세대 탑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현관증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가구의 힌지, 레일, 가구조명, 액세서리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体质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깊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외부발코니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될 예정임.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안방의 의 창호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인허가조건에 따라 골조턱 기준 H:1,200으로 시공되며,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입주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p>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탑입(거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각 층 세대 공동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장에 3층까지 방법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세대 내부에 공동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다용도실 세탁기용 수전은 마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마감 커버가 설치 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순빨래, 발코니)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탑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같은 탑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매립 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발코니 선hood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세대 탑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한종류를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건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준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 스타일업(마감재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 84A 주방 특화 선택 시 3구 인덕션 및 아일랜드형 렌지후드 적용(대형 주방가구+장식장+3구인덕션+아일랜드형 렌지후드+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캐슬 미드웨이 선반 ACC) 침실1,2 레이아웃선택형(대형팬트리+홈 오피스/대형팬트리+드레스룸) 선택 시 침실1의 불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 불박이장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은 유상옵션 금액에 포함되어있음.(84A,84B,84C,84E) 침실2,3 레이아웃선택형(대형팬트리+홈 오피스/대형팬트리+드레스룸/드레스룸+드레스룸) 선택 시 침실2의 불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 불박이장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은 유상옵션 금액에 포함되어있음.(84D) 84A 침실3 알파룸형은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함. 84B, 84C, 84E 침실3 레이아웃 선택형(홈 오피스/ 대형 드레스룸)은 선택형에 따라 안방 도어 위치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꾸밀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육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제작물,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당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보장, 추가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약정 행위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p>
분양상담 관련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사항</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접열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4-101-0001600	₩301,153,5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금액조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줍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체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체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체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체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상호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주)정엔지니어링	(주)정엔지니어링	(주)신화에프이원
금액	3,083,492,390	704,232,500	85,063,000	868,778,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사업주체)	시 공 사
상 호	(주)진호개발	대신자산신탁(주)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94211-0310251	110111-7124665	110111-0014764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74번길 30, 109동 3층 301호(중동)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 (주)진호개발, 시공사 롯데건설(주), 시행수탁자(사업주체) 대신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사업주체(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시행수탁자(사업주체)인 대신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라 체결한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시행위탁자 (주)진호개발 및 시행수탁자(사업주체) 대신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공급계약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준공검사 전 발생하자포함)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라 체결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사업주체)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시행수탁자(사업주체)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상 신탁재산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고,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 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 [주)진호개발]에 면책적 ·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토지매입을 위한 PF대출금 포함),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개발 부동산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시, 시공사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브랜드명칭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분양대행사(소속임직원 포함) 등은 시행수탁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모집공고에 따라 체결되는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공급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연체료, 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공급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 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공급계약상 시행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광고물 표시 기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부동산 개발업자 : 대신자산신탁(주)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67,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구산5지구)
- 지목 : 대 등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준공 전 대지소유권 100% 확보 예정
- 소유권 이전 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2023.06.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2023-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 사업일정(착공/ 준공/ 입주예정일) 착공: 2024. 03월/ 준공: 2027. 09월/ 입주예정일 : 2027. 09월

- 시행위탁자 : 죄진호개발
- 시공사 : 롯데건설㈜
- 시행수탁자 : 대신자산신탁㈜
- 분양대행사 : ㈜도시애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정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도청구 진행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8호에 의거 명기함)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김해시 구산동 547-4, 547-12, 620 대지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1심)을 받은 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사용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해시 구산동 551-2, 550-1 대지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 후 공탁을 하였으며, 사용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8/main/index.do>)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2-5 번지) | ☎ 055-321-550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